

■ 최신 판례 ■

[형사] 정보저장매체(USB) 원본과 출력물의 증거능력

장품 변호사

1. 사건 경위와 쟁점

이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왕재산'이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건설하고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 정보 등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상고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 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나 USB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나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 판시사항

(1) 우선 비공개증인신문절차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

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참조),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의 · 동일성/무결성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압수한 컴퓨터용 디스크나 USB 등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①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문서위조를 방지하는 전자지문의 일종)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③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최근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증거가 점차 증가하면서, 디지털 증거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원본과 출력물이 동일한지, 그리고 압수 시점부터 출력 시점까지 그 원본내용이 변동되지는 않았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본의 사후 변경이 용이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로 하여금 그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되지만, 사후적으로도 수사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가 증언을 통해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접 원본자료와 출력문건의 대조를 통해서도 그러한 동일성이나 무결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MP3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압수·수색이 개시된 이후 MP3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접속한 흔적이 나타났고, 그 접속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증거능력은 일반 서증과 달리 그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